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5. 10. 21.(화)

10월 24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안전한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정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대구·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합니다.

※ 시행 기간 : 2025.10.24.(금) 00:00부터 11.01.(토) 24:00까지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정보가 발령된 때 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https://kstay.hikorea.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 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은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APEC 기간 동안 숙박신고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관계 기관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과 외국인이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참고 자료> 1. 외국인 숙박신고제 개요
2.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안내문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책임자	과 장	윤철민 (02-2110-4090)
		담당자	사무관	권심택 (02-2110-4096)

대한민국
지정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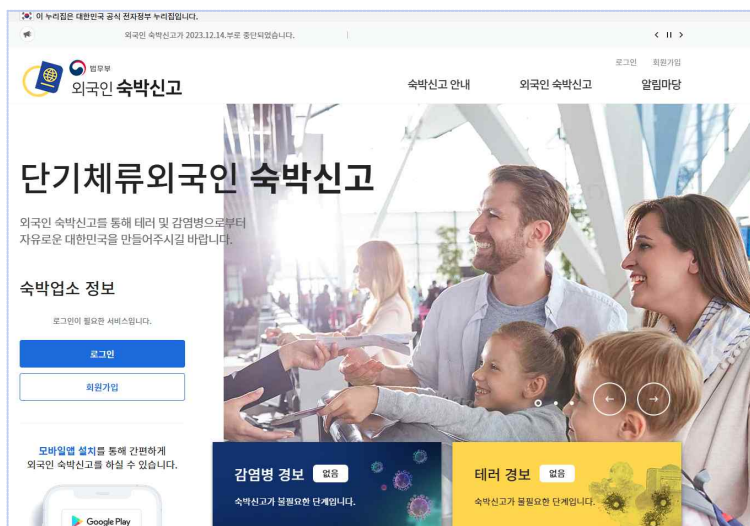


[참고 자료] 1. 외국인 숙박신고제 개요

【외국인 숙박신고제 개요】

- ▶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3(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 '20.12.10 시행), 시행규칙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 ▶ **(신고요건)** 감염병('관심' 단계) 또는 테러('주의' 단계) 위기경보 발령 시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숙박신고 자료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 **(신고대상자)**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 ※ B-1(사증면제), B-2(관광·통과),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 ▶ **(신고의무자)**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
 2.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자
- ▶ **(신고시기)** 기존 투숙자는 경보 발령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 경보 발령 이후 투숙한 자는 숙박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 신고
- ▶ **(신고방법)** 외국인이 투숙하는 숙소의 **숙박업자가 웹사이트(kstay.hikorea.go.kr)** 또는 **외국인 숙박신고 전용 모바일 앱으로 신고**
 - ※ 신고항목 : 숙박업소 정보,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투숙기간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사이트 (kstay.hikorea.go.kr)



외국인 숙박신고 모바일 앱



[참고 자료] 2.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제도 안내자료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 연결, 혁신, 번영
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 Connect, Innovate, Prosper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제도

시행 안내



도입목적

감염병 및 테러 위기 상황에서 한국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지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

신고시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 경보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으로 상향

외국인

대상 B-1(사증면제), B-2(관광·통과),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의 단기체류 자격을 부여받아 입국한 외국인

의무 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제공(위반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숙박업자

대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된 자

의무 숙박업자가 외국인이 제공한 여권 등의 정보를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위반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 자세한 사항은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홈페이지(<https://kstay.hikore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